##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남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82 발의연월일: 2020. 7. 9.

발 의 자:김남국·오영환·최혜영

강민정 • 박성준 • 권칠승

김경만 • 윤미향 • 황운하

권인숙 • 아수진비 • 김진애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병원의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,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행위,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.

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외부인이 수술 과정과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, 환자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수술 중 자신의 의사표현도 제한되어,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정보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.

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부정의료행위나 성범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우며, 의료사고에서도 환자나 보호자가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어려워 환자의 권리보호에도 취약함.

이에 정보비대칭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.

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를 부여하고, 의료인 및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의 신속·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(안 제26조의2 신설, 제63조제1항 및 제87조의2제2항제3호 신설).

##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제2절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6조의2(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) ① 제3조제2항제3호 가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 관의 장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 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료인,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술실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여야 한다. 다만, 의료인,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응급상황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자료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 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  - ④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자료는 의료분쟁 조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⑤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제2항에 따른 촬영의범위, 동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⑥ 이 법으로 정한 것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다.

제63조제1항 중 "제34조제2항"을 "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3 4조제2항"으로 한다.

제87조의2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26조의2제4항을 위반한 자

법률 제1706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26조의2제4항을 위반한 자

## 부 칙

이 법은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법률 제1706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26조의2(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) ① 제3조제2 항제3호가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7호에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료인,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술실 내에서 의료행위를하는 장면을 촬영하여야한다. 다만,의료인,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어려운 승급상황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자료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9조에 따라 촬영한 자료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보존하여야

제63조(시정 명령 등) ① 보건복 지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·구 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, 제16조제2항, 제21조제1항후단 및 같은 조 제2항·제3항, 제23조제2항, 제34조제2항, 제36조의2, 제37조제1항·제2항, 제38조제1항·제2항,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, 제45조, 제46조, 제47조제1항, 제58조의4제2항, 제62조제

한다. 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
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④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자료
는 의료분쟁 조정 등 보건복지
부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에는
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⑤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
기기의 설치와 제2항에 따른
촬영의 범위, 동의절차 등에 관
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
부령으로 정한다.
⑥ 이 법으로 정한 것 외에 영
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
관한 사항은 「개인정보 보호
법」에 따른다.
세63조(시정 명령 등) ①
<u>제26조의2제1항부터</u>
제3항까지, 제34조제2항

2항을 위반한 때, 종합병원·상 급종합병원·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·제3조의4제1항 ·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 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,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제5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 가 제57조제11항을 위반한 때 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·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 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 록 명할 수 있다.

- ②·③ (생 략) 제87조의2(벌칙) ① (생 략)
 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1. 2. (생략)

<신 설>

법률 제1706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87조의2(벌칙) ① (현행과 같
음)
②
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제26조의2제4항을 위반한 자
법률 제17069호 의료법
일부개정법률

2	다음	가 각	호의	이	느	하나	에
해대	당하	는 자	는 5	5년	ો કૅ	나의	징
역	기나	5천 당	<u></u> 만원	이하	의	벌금	에
처형	한다.						

1. • 2. (생략)

<u><신 설></u>

<u>3. · 4.</u> (생 략)

<u>о</u> )
②
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제26조의2제4항을 위반한 자
4 · 5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

같음)